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광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16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1일

발 의 자 : 이광호 의원(1명)

찬 성 자 : 김생환·장상기·추승우·김호진·
노식래·박순규·유 용·권영희·
이정인·정진철·김화숙·김혜련·
전병주·김 경 의원 (14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동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다만, 현행 서울시 공영차고지 31개소 중 20개 차고지가 건설이 아닌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조항과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설치”를 “설치·매입” 개정하여 서울시 운영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정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설치”를 “설치·매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